

일반공급(당첨자 및 예비입주자) 서류제출 안내문

■ 서류제출 일정 : 2023년 12월 14일(목) ~ 12월 17일(일) / 4일간 10:00 ~ 16:00

■ 서류제출 장소 : 문헌 푸르지오 트레시엘 견본주택 (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209)

- ※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3.11.10)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.
- ※ 아래 서류 의 적격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※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는 부적격 의심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은 취소됩니다.

| 구분 | 서류 유형 | | 해당 서류 | 발급 기준 |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| 필수 | 추가 (해당자) | | | |
| 일반공급 | ○ | | 신분증 | 본인 | 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※ 2020.12.21.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|
| | ○ | |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| 본인 | • 인감증명서(본인발급용) [용도 : 주택공급(신청)계약용 / 인감증명서상 인감도장 날인 필요] 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(서명 날인) |
| | ○ | | 주민등록표등본 (전체 포함) | 본인 | • 반드시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성명, 관계, 세대원의 전입일/변동일 사유, 세대구성 사유,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'전체 포함'으로 발급 |
| | | ○ | |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| •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분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• 공고일 이후 '공고일 현재 신청자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|
| | ○ | | 주민등록표 초본 (전체 포함) | 본인 | •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, 주소변동 사항, 세대주성명/관계 등을 '전체 포함'으로 발급 |
| | | ○ | |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| • 공고일 이후 '공고일 현재 신청자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(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 |
| | ○ | |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| 본인 및 세대구성원 | • 견본주택 비치 |
| | ○ | |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 | 본인 | 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에 따른 필수 제출 서류 ※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 |
| | ○ | | 혼인 관계증명서 (상세) | 본인 | •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'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'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※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 |
| | ○ | | 복무확인서 | 본인 | •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|
| | ○ | |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| 본인 (또는 배우자) | • 60㎡이하 당첨자의 경우 • 소득산정 시 가구원 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※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)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|
| | ○ | | 장애인 등록증(복지카드)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| 대상자 | •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(장애인등록증) 또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 등)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|
| | ○ | |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| 본인 | •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(2023.11.10.(금))로,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|
| | ○ | | 국내거소신고증 및 외국인등록증 | (예비)배우자, 세대원 | •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|
| ○ | |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|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| • 60㎡이하 당첨자의 경우 •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• 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[건강(의료)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(의료)보험증 제출 가능] •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 | |
| ○ | | 전세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, 확인 가능 자료 | 임차주택 | • 임대차계약서 • 낙찰 증명서류 : 매각허가결정(경매), 매각결정통지서(공매) / 경 · 공매에서 채권자임이 확인가능한 여타의 자료 ex) 경매 : 배당표, 배당요구신청서 / 공매 : 배분계산서 등 • 등기사항전부증명서 | |
|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| ○ | | 위임장 | 본인 | •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(견본주택 비치) |
| | ○ | |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| 본인 | • 인감증명서 (본인발급용) [용도 : 위임용 /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상 인감도장 날인 필요] 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(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 명기) |
| | ○ | | 대리인 신분증, 인장 | 대리인 | •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 필요 |
|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| ○ | |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| 해당 주택 | •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, 무허가건물확인서,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서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|
| | ○ | |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| 해당 주택 | •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|

※ 본 안내문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오류 및 오타자가 있을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 및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.